교직원 표창규정

제정: 1995.03.01

개정 : 2001.03.01

개정 : 2014.07.01 개정 : 2021.12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(이하 "교직원" 이라 한다.)의 표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표창대상) ① 표창대상은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 - 1. 장기근속자
 - 2. 헌신적인 봉사로서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
 - 3. 근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탁월한 자
 - ② 장기근속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10년을 단위로 하여 계속 표창할 수 있다.
- 제3조(근속연수의 계산) ① 근속연수는 본 대학교 학교법인 민송학원 산하 교육기관 및 수익사업체에서 전임교직원으로서 중단없이 계속하여 재직한 연수를 계산한다. <개정 2021, 12, 01,>
 -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통산한다.
 - 1.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
 - 2.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
 - 3.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해외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휴직기간
 - 4.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의 휴직기간 <개정 2014. 07. 01>
 - ③ 제2항 이외의 기타 휴직기간은 2분의 1의 비율로 근속기간에 통산하되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 - ④ 임시직으로 임용된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- 제4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1. 12. 01.>
 -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. 위원 및 간사는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

제5조(공적조서 회부) 총장은 표창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.

제6조(표창의 시기) 표창은 본 대학교 개교기념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7조(표창 및 부상) 표창은 표창장을 수여하되 꽤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제8조(표창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. <개정 2021, 12, 01.>

- 1.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2.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3.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

제9조(대리자의 수령)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